장기 약관\_제2024-19호

## 보험약관

# 반려동물 실손의료비보험 펫퍼민트 Cat&Family보험 다이<u>렉트</u>

판매버전 2.0

판매개시 2024. 10. 2

※본 약관은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

# **Petpermint**



#### 1. 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

## 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

#### 제1조(목적)

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 소유의 보험 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.

#### 제2조(용어의 정의)

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,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.

#### ① 계약관련 용어

0.01	TIO
용어	정의
계약자	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.
보험	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
수익자	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.
보험증권	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 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.
진단계약	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.
피보험자	반려동물의 소유와 관련하여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(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)을 말하 며,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소유자에 한합니다.
반려동물	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말하며, 이 계약에서 가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고 있는 고양이(猫)를 말합니다. 다만 아래에 기재된 고양이(猫)는 이 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.  1. 보험가입 당시의 연령이 생후 60일 이하 또는 만 8세(단, 실속형의 경우 만 10세)를 초과하는 고양이(猫)  2. 판매점, 브리더 등이 매매(賣買)를 목적으로 사육・관리하는 고양이(猫)  3. 특수한 목적의 고양이(猫)  4. 흥행을 목적으로 사육・관리하는 고양이(猫)  5. 유기동물 보호센터 등에서 사육・관리하는 고양이(猫)

##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

용어	정의
	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   의 사고로 반려동물이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.   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적으로
상해	흡입,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발생하는 중독 증상을 포함합니다.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
	독과 상습적으로 흡입,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 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질병	상해를 제외한 상병을 모두 포함합니다.
중요한 사항	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, 일부 보장 제외, 보험금식감,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.

## 1. 갱신형 펫퍼민트 반려묘 통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

#### 제1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

#### ① 특약 이름[반려묘 통원의료비보장 고급형]

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(정의)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(이하 「동물병원」이라 합니다)에 통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(정의)에서 정한 수의사(이하 「수의사」라 합니다)에게 치료를 받은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. 다만,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(500만원)을 한도로 합니다.

#### 【수의사법 제2조(정의)】

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"수의사"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.
- 4. "동물병원"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.

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,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(80%)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.

	항목	자기부담금	지급 한도
통원	통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	1일당 1만원/2만원 /3만원 중	1일당 15만원
의료비	통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	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	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00만원

보험금 지급금액 = [(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-자기부담금) × 보상비율, 지급 한도액] 중 적은 금액

## 【보험금 지급금액(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)[예시]】 ① 통원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(보상비율 80%)

- ·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16만원
- · 보험금 지급금액
  - = [(16만원 1만원) × 80%, 15만원] 중 적은금액
  - = 12만원

#### ② 통원중 수술을 한 경우(보상비율 80%)

- ·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00만원
- · 보험금 지급금액
  - = [(400만원-1만원) × 80%. 200만원] 중 적은금액
  - = 200만원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. 단, 이 특 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발생한 비뇨기계질환, 전염성복막염 또는 기타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 단,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⑤ 제1항의「연간」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.
- ⑥ 반려동물이 제1항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 비는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. 다만,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.
- 7 부활(효력회복)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「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」제18조(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)를 따릅니다. 이 경우 부활(효력회복)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.

#### ② 특약 이름[반려묘 통원의료비보장 기본형]

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(정의)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(이하 「동물 병원」이라 합니다)에 통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(정의)에서 정한 수의사(이하 「수의사」라 합니다)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. 다만,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(500만원)을 한도로 합니다.

#### 【수의사법 제2조(정의)】

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"수의사"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.
- 4. "동물병원"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.

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,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(70%)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.

	항목	자기부담금	지급 한도
통원	통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	1일당 1만원/2만원 /3만원 중	1일당 15만원
의료비	통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	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	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00만원

#### 【보험금 지급금액 산출방식】

보험금 지급금액 = [(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-자기부담금) × 보상비율, 지급 한도액] 중 적은 금액

## 【보험금 지급금액(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)[예시]】

- ① 통원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(보상비율 70%)
- ·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21만원
- · 보험금 지급금액
  - =[(21만원 1만원)×70%, 15만원] 중 적은금액
  - = 14만원
- ② 통원중 수술을 한 경우(보상비율 70%)
  - ·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00만원
  - · 보험금 지급금액
  - = [(400만원-1만원)×70%, 200만원] 중 적은금액
  - = 200만원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. 단, 이 특 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
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발생한 비뇨기계질환, 전염성복막염 또는 기타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 단,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5 제1항의「연간」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대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.
- ⑥ 반려동물이 제1항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 비는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. 다만,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.
- ① 부활(효력회복)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「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」제18조(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)를 따릅니다. 이 경우 부활(효력회복)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.

#### ③ 특약 이름[반려묘 통원의료비보장 실속형]

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(정의)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(이하 「동물병원」이라 합니다)에 통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(정의)에서 정한 수의사(이하 「수의사」라 합니다)에게 치료를 받은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. 다만,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(350만원)을 한도로 합니다.

#### 【수의사법 제2조(정의)】

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"수의사"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.
- 4. "동물병원"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.

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,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(50%)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.

	항목	자기부담금	지급 한도
통원	통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	1일당 1만원/2만원 /3만원 중	1일당 10만원
의료비	통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	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	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150만원

보험금 지급금액 = [(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-자기부담금) × 보상비율, 지급 한도액] 중 적은 금액

## 【보험금 지급금액(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)[예시]】 ① 통원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(보상비율 50%)

- ·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11만원
- · 보험금 지급금액
  - =[(11만원 1만원)×50%, 10만원] 중 적은금액
  - = 5만원

#### ② 통원중 수술을 한 경우(보상비율 50%)

- ·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00만원
- · 보험금 지급금액
  - =[(400만원-1만원)×50%, 150만원] 중 적은금액
  - = 150만원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. 단, 이 특 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발생한 비뇨기계질환, 전염성복막염 또는 기타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 단,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⑤ 제1항의「연간」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대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.
- ⑥ 반려동물이 제1항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 비는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. 다만,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.
- 기 부활(효력회복)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「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」제18조(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)를 따릅니다.
- 이 경우 부활(효력회복)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.

#### 제2조(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)

-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  - ① 계약자, 피보험자,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
  - ② 지진, 분화, 해일,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
  - ③ 전쟁, 외국의 무력행사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동, 소요,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
  -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, 폭발성,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
  -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

#### 【핵연료물질】

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.

#### 【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】

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.

- ⑥ 최초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 한 질병 및 상해
- ⑦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
- 8 반려동물을 범죄행위, 경주, 수색, 폭약탐지, 구조,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
- ⑨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, 수의 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
-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 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
- ①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② 회사는 다음에 정한 사유 중 하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 담한 치료비,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.
  - ① 반려동물의 선천적,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(보험개 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 합니다. 다만,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.)
  - ② 다음 정한 질병 및 이에 기인하는 질병(다만,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예방접종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.)
    - : 파보 바이러스 감염, 디스템퍼 바이러스 감염, 파라

인플루엔자 감염, 전염성 간염, 아데노 바이러스 2 형 감염, 광견병,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, 렙토스피 라 감염, 필라리아(심장사상충) 감염, 인플루엔자 감염,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, 고양이칼리시바이러스 감염증, 고양이바이러스성비기관지염, 고양이백혈병 바이러스감염증, 고양이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증, 고 양이클라미디아감염증

- ③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
- ④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·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,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
- ⑤ 반려동물의 임신·출산, 제왕절개, 인공유산, 발정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
- ⑥ 중성화,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
- ⑦ 미용으로 인한 비용
- ⑧ 귀 성형, 꼬리 성형,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
- ⑨ 손톱절제(며느리발톱 제거 포함), 잔존유치, 잠복고 환, 제대허니아(배꼽부위탈장), 항문낭 제거 등 건 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 안,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
- ⑩ 서혜부허니아(서혜부탈장), 첩모난생(속눈썹 질환), 눈물샘으로 인한 비용
- ① 입원중의 식이(食餌)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, 수의사 처방 의약품 이외의 것(건강보조 식품,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, 의약부외품 등)
- ② 한의학(단, 침술을 제외합니다.), 인도 의학, 허브요 법,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, 재활치료
- ③ 목욕비용(약욕 및 처방샴푸 값 포함) 및 귀 세정제 (이어 클리너), 예방 가능한 기생충(벼룩, 진드기, 모낭충 등)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
- (4) 반려동물호텔 또는 보관 비용, 산책료, 카운슬링 비용, 상담 수수료, 지도 비용 및 이와 동종의 비용
- (b) 왕진 비용, 가입동물의 이송비,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
- ⑤ 안락사 비용,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, 장례비,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
- ⑰ 마이크로 칩 이식 비용,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 (우송비 포함)

- ⑧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
- () 스케일링, 발치 등을 포함한 치아의 치과치료비용 (단, 치아를 제외한 구강질환 보장(구강질환의 치료 목적임에도 치아에 행해지는 치료는 보장하지 않습니 다))
- ② 아포퀠(Apoquel) 등의 JAK inhibitor(Janus kinase inhibitor) 약물
- ③ 제2항에 정하는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, 제2항에 정하는 조치(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.)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
## 2. 갱신형 펫퍼민트 반려묘 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

#### 제1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

#### ① 특약 이름[입원의료비보장 고급형]

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(정의)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(이하 「동물병원」이라 합니다)에 입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(정의)에서 정한 수의사(이하 「수의사」라 합니다)에게 치료를 받은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. 다만,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(500만원)을 한도로 합니다.

#### 【수의사법 제2조(정의)】

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"수의사"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.
- 4. "동물병원"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.

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,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(80%)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.

	항목	자기부담금	지급 한도
입원	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	1일당 1만원/2만원 /3만원 중	1일당 15만원
의료비	입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	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	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00만원

보험금 지급금액 = [(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-자기부담금) × 보상비율, 지급 한도액] 중 적은 금액

## 【보험금 지급금액(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)[예시]】 ①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(보상비율 80%)

- ·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16만원
- · 보험금 지급금액
  - = [(16만원 1만원) × 80%, 15만원] 중 적은금액
  - = 12만원

#### ② 입원 중 수술을 한 경우(보상비율 80%)

- ·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00만원
- · 보험금 지급금액
  - = [(400만원-1만원) × 80%. 200만원] 중 적은금액
  - = 200만원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. 단,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발생한 비뇨기계질환, 전염성복막염 또는 기타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 단,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⑤ 제1항의「연간」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.
- ⑥ 반려동물이 제1항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 비는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. 다만,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.
- 7 부활(효력회복)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「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」제18조(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)를 따릅니다. 이 경우 부활(효력회복)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.

#### ② 특약 이름[입원의료비보장 기본형]

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(정의)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(이하 「동물 병원」이라 합니다)에 입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(정의)에서 정한 수의사(이하 「수의사」라 합니다)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. 다만,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(500만원)을 한도로 합니다.

#### 【수의사법 제2조(정의)】

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"수의사"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.
- 4. "동물병원"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.

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,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(70%)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.

항목		자기부담금	지급 한도
입원	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	1일당 1만원/2만원 /3만원 중	1일당 15만원
의료비	입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	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	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00만원

#### 【보험금 지급금액 산출방식】

보험금 지급금액 = [(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-자기부담금) × 보상비율, 지급 한도액] 중 적은 금액

## 【보험금 지급금액(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)[예시]】

- ①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(보상비율 70%)
- ·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21만원
- · 보험금 지급금액
  - =[(21만원 1만원)×70%, 15만원] 중 적은금액
  - = 14만원

#### ② 입원 중 수술을 한 경우(보상비율 70%)

- ·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00만원
- · 보험금 지급금액
- = [(400만원-1만원)×70%, 200만원] 중 적은금액
- = 200만원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. 단, 이 특 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
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발생한 비뇨기계질환, 전염성복막염 또는 기타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 단,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⑤ 제1항의「연간」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.
- ⑥ 반려동물이 제1항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 비는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. 다만,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.
- ① 부활(효력회복)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「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」제18조(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)를 따릅니다. 이 경우 부활(효력회복)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.

#### ③ 특약 이름[입원의료비보장 실속형]

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(정의)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(이하 「동물병원」이라 합니다)에 입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(정의)에서 정한 수의사(이하 「수의사」라 합니다)에게 치료를 받은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. 다만,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(350만원)을 한도로 합니다.

#### 【수의사법 제2조(정의)】

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"수의사"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.
- 4. "동물병원"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.

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,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(50%)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.

	항목	자기부담금	지급 한도
입원	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	1일당 1만원/2만원 /3만원 중	1일당 10만원
의료비	입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	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	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150만원

보험금 지급금액 = [(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-자기부담금) × 보상비율, 지급 한도액] 중 적은 금액

## 【보험금 지급금액(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)[예시]】 ①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(보상비율 50%)

- ·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11만원
- · 보험금 지급금액
  - =[(11만원 1만원)×50%, 10만원] 중 적은금액
  - = 5만원

#### ② 입원 중 수술을 한 경우(보상비율 50%)

- ·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00만원
- · 보험금 지급금액
  - = [(400만원-1만원)×50%, 150만원] 중 적은금액
  - = 150만원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. 단, 이 특 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발생한 비뇨기계질환, 전염성복막염 또는 기타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 단,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⑤ 제1항의「연간」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대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.
- ⑥ 반려동물이 제1항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 비는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. 다만,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.
- ① 부활(효력회복)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「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」제18조(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)를 따릅니다.
- 이 경우 부활(효력회복)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 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.

#### 제2조(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)

-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  - ① 계약자, 피보험자,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
  - ② 지진, 분화, 해일,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
  - ③ 전쟁, 외국의 무력행사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동, 소요.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
  -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, 폭발성,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
  -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

#### 【핵연료물질】

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.

#### 【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】

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.

- ⑥ 최초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 한 질병 및 상해
- ⑦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
- 8 반려동물을 범죄행위, 경주, 수색, 폭약탐지, 구조,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
- ⑨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, 수의 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
-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 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
- ①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② 회사는 다음에 정한 사유 중 하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 담한 치료비,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.
  - ① 반려동물의 선천적,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(보험개 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 합니다. 다만,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.)
  - ② 다음 정한 질병 및 이에 기인하는 질병(다만,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예방접종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.)
    - : 파보 바이러스 감염, 디스템퍼 바이러스 감염, 파라

인플루엔자 감염, 전염성 간염, 아데노 바이러스 2 형 감염, 광견병,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, 렙토스피 라 감염, 필라리아(심장사상충) 감염, 인플루엔자 감염,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, 고양이칼리시바이러스 감염증, 고양이바이러스성비기관지염, 고양이백혈병 바이러스감염증, 고양이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증, 고 양이클라미디아감염증

- ③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
- ④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·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,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
- ⑤ 반려동물의 임신·출산, 제왕절개, 인공유산, 발정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
- ⑥ 중성화,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
- ⑦ 미용으로 인한 비용
- ⑧ 귀 성형, 꼬리 성형,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
- ⑨ 손톱절제(며느리발톱 제거 포함), 잔존유치, 잠복고 환, 제대허니아(배꼽부위탈장), 항문낭 제거 등 건 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 안,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
- ⑩ 서혜부허니아(서혜부탈장), 첩모난생(속눈썹 질환), 눈물샘으로 인한 비용
- ⑪ 입원중의 식이(食餌)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, 수의사 처방 의약품 이외의 것(건강보조 식품,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, 의약부외품 등)
- ② 한의학(단, 침술을 제외합니다.), 인도 의학, 허브요 법,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, 재활치료
- ③ 목욕비용(약욕 및 처방샴푸 값 포함) 및 귀 세정제 (이어 클리너), 예방 가능한 기생충(벼룩, 진드기, 모낭충 등)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
- (4) 반려동물호텔 또는 보관 비용, 산책료, 카운슬링 비용, 상담 수수료, 지도 비용 및 이와 동종의 비용
- (5) 왕진 비용, 가입동물의 이송비,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
- ⑤ 안락사 비용,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, 장례비,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
- ⑰ 마이크로 칩 이식 비용,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 (우송비 포함)

- ⑧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
- () 스케일링, 발치 등을 포함한 치아의 치과치료비용 (단, 치아를 제외한 구강질환 보장(구강질환의 치료 목적임에도 치아에 행해지는 치료는 보장하지 않습니 다))
- ② 아포퀠(Apoquel) 등의 JAK inhibitor(Janus kinase inhibitor) 약물
- ③ 제2항에 정하는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, 제2항에 정하는 조치(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.)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
## 3. 갱신형 펫퍼민트 반려묘 통원의료비॥보장 특별약관

#### 제1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

#### ① 특약 이름[통원의료비Ⅱ보장 고급형]

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(정의)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(이하 「동물병원」이라 합니다)에 통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(정의)에서 정한 수의사(이하 「수의사」라 합니다)에게 치료를 받은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. 다만,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(1,000만원)을한도로 합니다.

#### 【수의사법 제2조(정의)】

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"수의사"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.
- 4. "동물병원"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.

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,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(80%)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.

항목		자기부담금	지급 한도
통원	통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	1일당 1만원/2만원 /3만원 중	1일당 15만원
	통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	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	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50만원

보험금 지급금액 = [(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-자기부담금) × 보상비율, 지급 한도액] 중 적은 금액

## 【보험금 지급금액(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)[예시]】 ① 통원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(보상비율 80%)

- ·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16만원
- · 보험금 지급금액
  - =[(16만원 1만원)×80%, 15만원] 중 적은금액
  - = 12만원

#### ② 통원중 수술을 한 경우(보상비율 80%)

- ·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10만원
- · 보험금 지급금액
  - = [(410만원-1만원) × 80%. 250만원] 중 적은금액
  - = 250만원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. 단, 이 특 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발생한 비뇨기계질환, 전염성복막염 또는 기타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 단,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⑤ 제1항의「연간」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.
- ⑥ 반려동물이 제1항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 비는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. 다만,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.
- 7 부활(효력회복)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「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」제18조(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)를 따릅니다. 이 경우 부활(효력회복)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.

#### ② 특약 이름[통원의료비Ⅱ보장 기본형]

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(정의)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(이하 「동물 병원」이라 합니다)에 통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(정의)에서 정한 수의사(이하 「수의사」라 합니다)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. 다만,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(1,000만원)을한도로 합니다.

#### 【수의사법 제2조(정의)】

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"수의사"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.
- 4. "동물병원"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.

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,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(70%)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.

항목		자기부담금	지급 한도
통원 의료비	통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	1일당 1만원/2만원 /3만원 중	1일당 15만원
    	통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	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	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50만원

#### 【보험금 지급금액 산출방식】

보험금 지급금액 = [(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-자기부담금) × 보상비율, 지급 한도액] 중 적은 금액

## 【보험금 지급금액(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)[예시]】

- ① 통원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(보상비율 70%)
- ·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21만원
- · 보험금 지급금액
  - =[(21만원 1만원)×70%, 15만원] 중 적은금액
  - = 14만원
- ② 통원중 수술을 한 경우(보상비율 70%)
  - ·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10만원
  - · 보험금 지급금액
  - = [(410만원-1만원)×70%, 250만원] 중 적은금액
  - = 250만원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. 단, 이 특 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
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발생한 비뇨기계질환, 전염성복막염 또는 기타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 단,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⑤ 제1항의「연간」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대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.
- ⑥ 반려동물이 제1항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 비는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. 다만,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.
- ① 부활(효력회복)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「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」제18조(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)를 따릅니다. 이 경우 부활(효력회복)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.

#### ③ 특약 이름[통원의료비Ⅱ보장 실속형]

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(정의)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(이하 「동물병원」이라 합니다)에 통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(정의)에서 정한 수의사(이하 「수의사」라 합니다)에게 치료를 받은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. 다만,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(700만원)을 한도로 합니다.

#### 【수의사법 제2조(정의)】

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"수의사"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.
- 4. "동물병원"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.

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,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(50%)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.

	항목	자기부담금	지급 한도
통원 의료비	통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	1일당 1만원/2만원 /3만원 중	1일당 10만원
	통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	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	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00만원

보험금 지급금액 = [(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-자기부담금) × 보상비율. 지급 한도액] 중 적은 금액

## 【보험금 지급금액(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)[예시]】 ① 통원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(보상비율 50%)

- ·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11만원
- · 보험금 지급금액
  - =[(11만원 1만원)×50%, 10만원] 중 적은금액
  - = 5만원

#### ② 통원중 수술을 한 경우(보상비율 50%)

- ·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10만원
- · 보험금 지급금액
  - =[(410만원-1만원)×50%, 200만원] 중 적은금액
  - = 200만원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. 단, 이 특 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발생한 비뇨기계질환, 전염성복막염 또는 기타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 단,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⑤ 제1항의「연간」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대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.
- ⑥ 반려동물이 제1항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 비는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. 다만,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.
- 기 부활(효력회복)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「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」제18조(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)를 따릅니다.
- 이 경우 부활(효력회복)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.

#### 제2조(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)

-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  - ① 계약자, 피보험자,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
  - ② 지진, 분화, 해일,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
  - ③ 전쟁, 외국의 무력행사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동, 소요.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
  -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, 폭발성,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
  -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

#### 【핵연료물질】

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.

#### 【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】

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.

- ⑥ 최초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 한 질병 및 상해
- ⑦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
- 8 반려동물을 범죄행위, 경주, 수색, 폭약탐지, 구조,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
- ⑨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, 수의 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
-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 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
- ①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② 회사는 다음에 정한 사유 중 하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 담한 치료비,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.
  - ① 반려동물의 선천적,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(보험개 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 합니다. 다만,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.)
  - ② 다음 정한 질병 및 이에 기인하는 질병(다만,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예방접종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.)
    - : 파보 바이러스 감염, 디스템퍼 바이러스 감염, 파라

인플루엔자 감염, 전염성 간염, 아데노 바이러스 2 형 감염, 광견병,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, 렙토스피 라 감염, 필라리아(심장사상충) 감염, 인플루엔자 감염,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, 고양이칼리시바이러스 감염증, 고양이바이러스성비기관지염, 고양이백혈병 바이러스감염증, 고양이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증, 고 양이클라미디아감염증

- ③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
- ④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·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,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
- ⑤ 반려동물의 임신·출산, 제왕절개, 인공유산, 발정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
- ⑥ 중성화,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
- ⑦ 미용으로 인한 비용
- ⑧ 귀 성형, 꼬리 성형,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
- ⑨ 손톱절제(며느리발톱 제거 포함), 잔존유치, 잠복고 환, 제대허니아(배꼽부위탈장), 항문낭 제거 등 건 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 안,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
- ⑩ 첩모난생(속눈썹 질환), 눈물샘으로 인한 비용
- ① 입원중의 식이(食餌)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, 수의사 처방 의약품 이외의 것(건강보조 식품,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, 의약부외품등)
- ② 한의학(단, 침술을 제외합니다.), 인도 의학, 허브요 법,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, 재활치료
- ③ 목욕비용(약욕 및 처방샴푸 값 포함) 및 귀 세정제 (이어 클리너), 예방 가능한 기생충(벼룩, 진드기, 모낭충 등)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
- ④ 반려동물호텔 또는 보관 비용, 산책료, 카운슬링 비용, 상담 수수료, 지도 비용 및 이와 동종의 비용
- (5) 왕진 비용, 가입동물의 이송비,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
- ⑥ 안락사 비용,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, 장례비,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
- ⑰ 마이크로 칩 이식 비용,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 (우송비 포함)
- □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

③ 제2항에 정하는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, 제2항에 정하는 조치(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.)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
## 4. 갱신형 펫퍼민트 반려묘 입원의료비॥보장 특별약관

#### 제1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

#### ① 특약 이름[입원의료비Ⅱ보장 고급형]

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(정의)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(이하 「동물병원」이라 합니다)에 입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(정의)에서 정한 수의사(이하 「수의사」라 합니다)에게 치료를 받은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. 다만,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(1,000만원)을한도로 합니다.

#### 【수의사법 제2조(정의)】

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"수의사"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.
- 4. "동물병원"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.

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,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(80%)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.

	항목	자기부담금	지급 한도
입원 의료비	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	1일당 1만원/2만원 /3만원 중	1일당 15만원
	입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	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	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50만원

보험금 지급금액 = [(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-자기부담금) × 보상비율, 지급 한도액] 중 적은 금액

## 【보험금 지급금액(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)[예시]】 ①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(보상비율 80%)

- ·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16만원
- · 보험금 지급금액
  - =[(16만원 1만원)×80%, 15만원] 중 적은금액
  - = 12만원

#### ② 입원 중 수술을 한 경우(보상비율 80%)

- ·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10만원
- · 보험금 지급금액
  - = [(410만원-1만원) × 80%. 250만원] 중 적은금액
  - = 250만원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. 단, 이 특 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발생한 비뇨기계질환, 전염성복막염 또는 기타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 단,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⑤ 제1항의「연간」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.
- ⑥ 반려동물이 제1항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 비는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. 다만,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.
- 7 부활(효력회복)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「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」제18조(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)를 따릅니다. 이 경우 부활(효력회복)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.

#### ② 특약 이름[입원의료비Ⅱ보장 기본형]

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(정의)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(이하 「동물 병원」이라 합니다)에 입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(정의)에서 정한 수의사(이하 「수의사」라 합니다)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. 다만,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(1,000만원)을한도로 합니다.

#### 【수의사법 제2조(정의)】

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"수의사"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.
- 4. "동물병원"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.

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,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(70%)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.

항목		자기부담금	지급 한도
입원 의료비 ॥	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	1일당 1만원/2만원 /3만원 중	1일당 15만원
	입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	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	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50만원

#### 【보험금 지급금액 산출방식】

보험금 지급금액 = [(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-자기부담금) × 보상비율, 지급 한도액] 중 적은 금액

## 【보험금 지급금액(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)[예시]】

- ①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(보상비율 70%)
- ·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21만원
- · 보험금 지급금액
  - =[(21만원 1만원)×70%, 15만원] 중 적은금액
  - = 14만원
- ② 입원 중 수술을 한 경우(보상비율 70%)
  - ·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10만원
  - · 보험금 지급금액
  - = [(410만원-1만원)×70%, 250만원] 중 적은금액
  - = 250만원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. 단, 이 특 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
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발생한 비뇨기계질환, 전염성복막염 또는 기타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 단,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5 제1항의「연간」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대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.
- ⑥ 반려동물이 제1항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 비는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. 다만,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.
- ① 부활(효력회복)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「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」제18조(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)를 따릅니다. 이 경우 부활(효력회복)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.

#### ③ 특약 이름[입원의료비Ⅱ보장 실속형]

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(정의)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(이하 「동물병원」이라 합니다)에 입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(정의)에서 정한 수의사(이하 「수의사」라 합니다)에게 치료를 받은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. 다만,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(700만원)을 한도로 합니다.

#### 【수의사법 제2조(정의)】

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"수의사"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.
- 4. "동물병원"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.

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,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(50%)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.

항목		자기부담금	지급 한도
입원 의료비 ॥	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	1일당 1만원/2만원 /3만원 중	1일당 10만원
	입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	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	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00만원

보험금 지급금액 = [(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-자기부담금) × 보상비율, 지급 한도액] 중 적은 금액

## 【보험금 지급금액(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)[예시]】 ①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(보상비율 50%)

- ·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11만원
- · 보험금 지급금액
  - =[(11만원 1만원)×50%, 10만원] 중 적은금액
  - = 5만원

#### ② 입원 중 수술을 한 경우(보상비율 50%)

- ·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10만원
- · 보험금 지급금액
  - =[(410만원-1만원)×50%, 200만원] 중 적은금액
  - = 200만원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. 단, 이 특 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발생한 비뇨기계질환, 전염성복막염 또는 기타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 단,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⑤ 제1항의「연간」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대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.
- ⑥ 반려동물이 제1항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 비는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. 다만,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.
- 기 부활(효력회복)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「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」제18조(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)를 따릅니다.
- 이 경우 부활(효력회복)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.

#### 제2조(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)

-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  - ① 계약자, 피보험자,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
  - ② 지진, 분화, 해일,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
  - ③ 전쟁, 외국의 무력행사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동, 소요.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
  -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, 폭발성,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
  -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

#### 【핵연료물질】

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.

#### 【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】

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.

- ⑥ 최초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 한 질병 및 상해
- ⑦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
- 8 반려동물을 범죄행위, 경주, 수색, 폭약탐지, 구조,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
- ⑨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, 수의 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
-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 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
- ①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② 회사는 다음에 정한 사유 중 하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 담한 치료비,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.
  - ① 반려동물의 선천적,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(보험개 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 합니다. 다만,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.)
  - ② 다음 정한 질병 및 이에 기인하는 질병(다만,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예방접종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.)
    - : 파보 바이러스 감염, 디스템퍼 바이러스 감염, 파라

인플루엔자 감염, 전염성 간염, 아데노 바이러스 2 형 감염, 광견병,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, 렙토스피 라 감염, 필라리아(심장사상충) 감염, 인플루엔자 감염,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, 고양이칼리시바이러스 감염증, 고양이바이러스성비기관지염, 고양이백혈병 바이러스감염증, 고양이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증, 고 양이클라미디아감염증

- ③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
- ④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·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,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
- ⑤ 반려동물의 임신·출산, 제왕절개, 인공유산, 발정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
- ⑥ 중성화,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
- ⑦ 미용으로 인한 비용
- ⑧ 귀 성형, 꼬리 성형,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
- ⑨ 손톱절제(며느리발톱 제거 포함), 잔존유치, 잠복고환, 제대허니아(배꼽부위탈장),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,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
- ⑩ 첩모난생(속눈썹 질환), 눈물샘으로 인한 비용
- ① 입원중의 식이(食餌)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, 수의사 처방 의약품 이외의 것(건강보조 식품,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, 의약부외품등)
- ② 한의학(단, 침술을 제외합니다.), 인도 의학, 허브요 법,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, 재활치료
- ③ 목욕비용(약욕 및 처방샴푸 값 포함) 및 귀 세정제 (이어 클리너), 예방 가능한 기생충(벼룩, 진드기, 모낭충 등)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
- ④ 반려동물호텔 또는 보관 비용, 산책료, 카운슬링 비용, 상담 수수료, 지도 비용 및 이와 동종의 비용
- (5) 왕진 비용, 가입동물의 이송비,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
- ⑥ 안락사 비용,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, 장례비,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
- ⑰ 마이크로 칩 이식 비용,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 (우송비 포함)
- □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

③ 제2항에 정하는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, 제2항에 정하는 조치(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.)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